

[]휴업 []폐업 []재개업 신고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발급일	처리기간 즉시
신고인	성명(법인명)	주민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	
	주소 (전화번호:)		
영업장	명칭(상호)		
	주소	(전화번호:)	
	영업의 종류	[]동물생산업 []동물수입업 []동물판매업 []동물장묘업 []동물전시업 []동물위탁관리업 []동물미용업 []동물운송업	
재개업(폐업)일	년 월 일		
휴업기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		
사유			

「동물보호법」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의 []휴업, []폐업, []재개업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(폐업의 경우만 해당하며, 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만 작성합니다) 2. 동물처리계획서(동물장묘업자는 제외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유의사항

- 1. 휴업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을 할 때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.
- 2. 기재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.
- 3. 신청인의 업종에 따라 영업의 종류란에 해당되는 업종의 “[]”란에 √ 표시를 합니다. 해당 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려면 해당되는 업종 모두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처리절차

